

## 부천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0. 26

나. 제안자 : 김영남 의원 외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1998.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전설교통위원회(98. 10.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남 의원)

가. 제안이유

○ 98. 5. 23 규제완화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통하여 부천시 건축경기 부양으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도  
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고
- 풍치지구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 “너비 15미터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함.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동조례와 건축조례 제36조제9호와 어떻게 다른가?	○ 건축조례 제36조의 판매시설은 준공업지역 내의 대형 판매시설이며 동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및 풍치지구 내의 300평 규모의 판매시설을 말하는 것임.
○ 동조례의 개정으로 집단민원의 발생 요인은 없는지?	○ 동조례는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판매시설로 사실상 대로에 접해 있는 시설로 주거지역 내의 소규모 판매시설과는 연관이 없어 집단민원의 소지가 별로 없다고 사료됨.
○ 98. 5. 23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을 안한 이유는?	○ 98. 5. 23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료 수집, 조례안 성안 등 98년 정기회에 개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4 호
의결년월일	98. 10. 28 (제65회)

발의년월일 : 1998. 10. 26

발 의 자 : 김영남 의원 외 15인

## 1. 제안이유

- 98. 5. 23 규제완화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통하여 부천시 건축경기 부양으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도모 죄자 함.

## 2. 주요골자

-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고
- 풍치지구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 “너비 15미터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함.

**부천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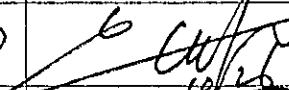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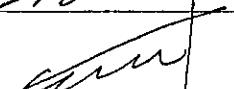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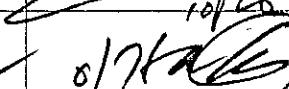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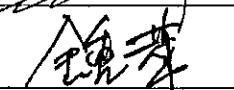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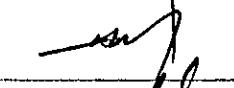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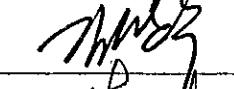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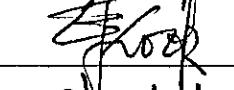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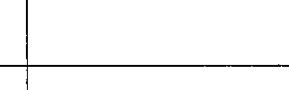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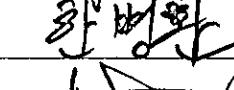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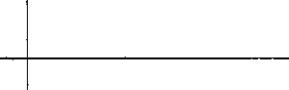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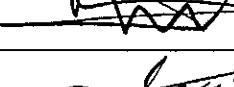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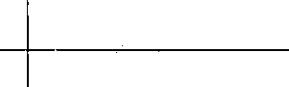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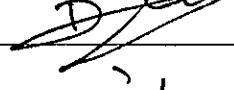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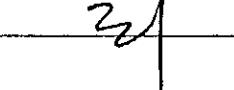
6.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네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찬성의원 서명명부

의원명	서명	의원명	서명
류종현		류종현	
최은근		최은근	
김종하		김종하	
한기진		한기진	
김반수		김반수	
전성기		전성기	
화병화		화병화	
김대수		김대수	
박정신		박정신	
최희영		최희영	